

	<p>○부천시 소유 공원용지는 얼마?</p>	<p>와 근린공원 1개소는 기조성되어 이용중에 있는 중앙공원내의 원미동 14번지 일원 은 레포츠공원시설로 조성중에 있음. ○총 80개소 699,390 ㎡로 전체공원의 13.46%임.</p>
전 만 기	<p>○시유지로서 미조성된 공 원현황은?</p>	<p>○심곡 1동 652-2번지 심곡동 186번지가 미 조성되었으나 심곡 1 동 652-2번지는 전해 완씨와 지상물 철거관 개로 소송 개류중에 있는 심곡동 186번지 는 원미국교운동장으 로서 현재로는 조성 의 어려움이 있음.</p>

4. 토론유지

- 가. 반대토론 : 없음.
- 나. 찬성토론

의원명	주요내용
양재오	<p>○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점용허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며 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하는 동조례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밝힌 바와같이 제 9조에 "점용면 적의 재산가격은 개별지가에 의한 공사지가에 의한다" 라고 제 4항을 추가하여 재산가격에 대한 평가기 준을 명확히 해야하며 별표 5목 의 점용료율 $\frac{5}{100}$ 른 $\frac{10}{100}$ 으로 고쳐 타법률 (산립법 시행령) 에서 정한 바와의 형평을 갖춰야 할것</p>

의원명	주요내용
	<p>이며 별표 9목의 점용료율 $\frac{5}{100}$ 도 $\frac{10}{100}$ 으로 고쳐 전기 통신설비 및 전선료에 적용하 는 점용율과의 형평을 갖춰야 된다고 보는 수정안을 제출</p>
윤호산	○수정안에 동의
이갑산	○수정안에 동의
전 만 기	○수정안에 동의

5. 수정안의 요지

- 가. 제안일자 : 1991년 10월 16일 제 1차회의
- 나. 제안자 : 양재오의원
- 다. 수정이유 : 찬성토론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 라. 수정주요골자

- 동 조례안 제 9조 제 3항 다음에 제
4항으로 "점용면적 재산가격은 개별
지가에 의한 공사지가에 의한다" 의
24자의 추가조항 신설
- 별표 5목 및 9목의 점용료율 $\frac{5}{100}$
를 각각 $\frac{10}{100}$ 으로 수정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
고서심사결과◆

1991. 10. 17.
지역개발경제발전위원회

1. 심사결과

- 가. 제안일자 : 1991.10.10.
- 나. 제안자 : 부천시청
- 다. 회부일자 : 1991.10.15 일 회부
- 라. 상정일자 : 제 1 차 지역경제 특별위원회 (1991.10.1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행정과장, 주택과장)

가. 제안이유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 주차장 증설이 이에 따르지 못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 주차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법규가 90 년도로 정비됨에 따라 조례에 위입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교통소통의 원활 및 시민편의를 도모코자 함.

나. 주요골자

- 1)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규제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 2 조 제 2 항 관련) 규제완화 조항을 신설하여 주차전용 건축물 시설을 촉진
 - 건폐율 : 9/10 이하
 -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 ㎡ 이하
 - 용적율 : 1000 % 이하
- 2) 부설주차장의 주차소요 최소면적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 14 조 관련) 주차소요 최소면적을 완화하여 주차공간을 최대한용
 - 1 대당 최소면적 24 ㎡ (현행) 18 ㎡ (개정)
- 3) 노외주차장설치허가신고에 대하여 (법 제 12 조 제 2 항 관련)
 - 일정규모이상에 대하여 허가제를 규모에 관계없이 신고제로 개정하여 절차완화로 주차장설치 촉진

- 40대 규모이상 허가제 (현행) 신고제 (개정)
- 4)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대하여 (시행령 제 16 조 제 3 항 관련)
 -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공간 확대 설치 의무화로 차량수요증가 대비
 - 단독주택 (신설) - 300 ㎡당 1대, 최고시 200 ㎡당 1대 (추가)
 - 근린생활시설 400 ㎡당 1대 (현행) - 200 ㎡당 1대 (개정)
 - 종합병원 100 ㎡당 1대 (현행) - 3병상당 1대 또는 120 ㎡당 1대중 많은 수 (개정)
- 5)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규정에 대하여 (규칙 제 11 조 관련) 소규모 주차장의 경우 규제완화신설로 주차장설치 촉진
 - 5대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의 경우 주차구획연접 배치가능 단, 건축선으로부터 2m 후퇴하여 설치
- 6)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 대하여 (법 19 조의 3)
 - 일정규모이상의 시설물의 주차장에 대하여 신고후 일반이용에 제공및 주차요금징수로 기존주차장 활용율 제고

현	행	개	정
건축물부설 주차장 설치자는 건축물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반이용에 제공 및 관리비 징수할 수 있음.		근린시설물의 20대 규모이상의 주차장으로 시장에서 신고후 일반이용에 제공 및 관리비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준하여 징수 (개정)	

- 7)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하여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현실화하여

장시간 주차의제로 시민이용요금
 · 기본 30분당 주차요금
 노상주차장 - 200 원 (현행) -
 600 원 (개정)
 노외주차장 - 600 원 (신설)

3. 질문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공영주차장요금인 노상주차장의 경우 30분당 현행 200 원에서 600 원으로 노외주차장의 경우 무료이던 것을 600 원으로 주차요금을 너무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니냐?	인근 수도권지역의 시·수원·광명·안양등의 주변도의 지역의 주차요금과 형평을 유지하고 공영주차장 운영상 안전비 기타 운영필요경비를 감안 산출한 근거임.
단독주택에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인하여 주거풍치지역인 (역곡·고강) 지역은 재산상의 불이익을 가중하게 되는 사항이 아닌지?	본 설치기준이 강화된 사항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며, 재산상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건축물평수 500 m ² 에서 400 m ² 으로 강화시킨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의 여부?	주차장법 제 19 조 3 항에 의하여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음.
부천시 총차량대수 및 가구당 차량소유대수는 몇대인지?	부천시 총차량은 67,000 대로 2.8 가구당 1대꼴로 1개월에 약 2,000 여대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음.
10 월 13 일 새질서	90년 10 월 13 일조치이

새생활 실천운동이후 불법주정차를 단속한 실적은 얼마나 되며 과징금은 얼마인가?	후 35,600 여대를 불법주정차를 단속하여 2억 7천만원을 부과하여 1억 5천만원을 징수 (징수율 48%) 하였음.
건축물에 부설된 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것에 대한 조치내용은?	90년도 40 여개소를 원상복구시키고 23 건을 현재 의법조치원상복구추진중이며, 금년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음.
노상주차장일 경우 면적이 100 평이면 차량주차가능 대수는 몇대정도인가?	노상주차장일 경우 10대 - 15대 정도 주차가 가능함.
주차장을 신고제로 하여 운영할 경우 주차장운영의 수익성 및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지?	주차장 완화방안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신고제로 운영하면 수익성 및 현실성이 있다고 본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지 및 기타 토지 소유주가, 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각종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각종 세금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현재 면세혜택을 받고 있음)
역곡3동 역곡남부역까지 양쪽도로상의 2중주차를 함으로써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음. 소방도로상의 2중노상 주차가 가능한지 불법이면 단속을 왜 안하는지?	중앙로 기타 간선도로상의 불법주차를 단속함으로써, 차량이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 현지답사후 조치하도록 하겠음.
북개천부근의 불법주정차 단속 및 세차행위가 단속되어야 주차장으로 활용가능하며 세	불법주정차 및 세차행위에 대하여는 해당과 (수질오염방지법 위반)과 합동으로

<p>수중대 및 기타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한 것임. 이에 대한 시당국의 대처방안은?</p>	<p>강력단속을 하겠으며, 노상공영 주차장으로 활용할시에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사료됨.</p>	<p>이 옮겼는데 이점을 검토해서 상정한 것인지?</p>	<p>도를 해나가겠음.</p>				
<p>심곡북개천지역의 부천시내의 또다른 지역의 노상주차장은 없는지?</p>	<p>우선 심곡북개천지역에 1차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성과가 좋을시 춘의동 북개천지역 또는 주차장 가능지역을 확보토록 하여 보겠음.</p>	<p>건물용도 변경할 경우에 기존건립된 건물에 대하여도 강화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지?</p>	<p>건물을 용도변경할 경우에는 새로운 건축물로 간주 주차장시설을 설치하여야만 함.</p>				
<p>본 주차장조례안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민의 저항이나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p>	<p>건축법에 대한 부설주차장은 '90.12.27일부터 상위법에 의하여 시행되어 왔으며 건축주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하겠고 현재까지 시민들의 민원소지 사항이나 주민의 반발 소지가 없음.</p>	<p>4. 토론유지 가. 찬성토론</p>					
<p>북개천 노상주차장운영에 대한 시 당국의 대처방안은?</p>	<p>수질오염 방지법에 의거 환경보호과와 교통행정과에서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주변의 카 인테리어점 상가 입주자들의 저항이 우려되고 있으나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단속중이며,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설계진행중이며, 금년말안에 주차장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706 695 864 753">의 원 명</th> <th data-bbox="864 695 1275 753">주 요 요 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706 753 864 994">이후복의원</td> <td data-bbox="864 753 1275 994">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심지역의 주차공간확보 및 교통소통의 해소와 나아가 시민의 편의제공 측면에서 볼때 본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 수정원안에 찬성함.</td> </tr> </tbody> </table> <p>나. 반대토론 없 음</p>		의 원 명	주 요 요 지	이후복의원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심지역의 주차공간확보 및 교통소통의 해소와 나아가 시민의 편의제공 측면에서 볼때 본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 수정원안에 찬성함.
의 원 명	주 요 요 지						
이후복의원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심지역의 주차공간확보 및 교통소통의 해소와 나아가 시민의 편의제공 측면에서 볼때 본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 수정원안에 찬성함.						
<p>공용주차장의 주차장 요금을 인상시켜줄 경우 사실주차장의 주차요금도 인상시켜 주어야 할 연쇄적반응</p>	<p>정부의 10%물가억제 정책치원에서 주차장 요금이 신고제로 되어 있기는 하나 계속 지속적으로 행정적인 지</p>	<p>5.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제안일자 : 1991년 10월 16일 제 1 차 지역경제특별위원회 ○ 제안자 : 송내 1동 이후복의원, 범박동 강문식의원 발의</p> <p>나. 수정이유 부천시 주차장조례중 제 3조 1항 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와 관련 본 조항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사실주차장 주차요금과 같은 수준의 요금으로 상향 조정하여줄 경우, 연쇄적인 사실주차장의 주차요금 인상은 부추일 수 있고, 이렇게 될 경우 시민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인</p>					

하여 물가인상 억제정책에 역행한다는 차원에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

다. 수정주요골자

부천시 주차장조례 제 3 조 1 항 중

○ 노상 1 급지 1 회 주차요금 (1 구회당 30 분마다) 600 원에서 400 원으로 월 정기권 주간요금을 9 만원에서 6 만원으로 야간요금을 6 만원에서 4 만원으로

○ 노상 2 급지 1 회 주차요금 (1 구회당 30 분마다) 400 원을 300 원으로 월 정기권 주간에 월 6 만원을 4 만원으로 야간 월 4 만원을 3 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노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중

○ 1 급지 1 회 주차요금 (1 구회당 30 분마다) 을 600 원에서 400 원으로 월 정기권 주간 7 만 5 천원을 5 만원으로 야간 월 5 만원은 4 만원으로

○ 2 급지 1 회 주차요금 (1 구회 30 분마다) 400 원을 300 원으로 수정하는 것임.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소수의견요지

○ 건축물부설 주차장의 경우 무단용도 변경에 대한 행정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야만이 주차공간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부천도시계획 (지역·시설) 변경결정안심사 보고서

1991. 10. 17.
지역개발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1. 10. 10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1년 10월 16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 1 차 지역개발특별위원회 (1991. 10. 1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가. 제안이유

○ 국유철도 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휴철도택지를 역무시설 현대화와 상업시설 및 주차장 등을 건립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철도청장으로부터 신청이 있어 부천시의회 제 2 회, 제 3 회 임시회 상정한 바 있으나 동역사건립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교통난심화 등을 사유로 부결된바 있어 이를 보완하여 제상정하여 주민의 대표적 인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용도지역 : 자연녹지 28,773 ㎡를 일 반상업 28,773 ㎡로 변경
- 시설녹지 : 완충녹지인 서울, 인천구간 10,140 ㎡를 해제

3. 질의 및 답변요지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질 의	답 변
○본 도시계획변경안이 시의회의 의건청취사항인지, 아니면 의건사항인지?	○도시계획법 제 12 조에 의거 의건사항이며, 만약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의건청취를 듣는 것임.